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155호 |
| 의결 연월일 | 2015년 월 일 (제339회) |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15년 4월 13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5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5년 4월 1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의 확대(안 제3조)
 - 적용범위 추가 :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
-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(안 제7조)
 - 사업 추가 : 5개호→ 8개호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.

- 6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
- 7.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
- 8. 그 밖의 직원 복지·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② 생략 <u><신 설></u>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~ ② 생략 <u>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 1. ~ 5. 생략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</p> | 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 1. ~ 5. 생략 <u>6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</u> <u>7.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</u> <u>8. 그 밖의 직원 복지·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</u></p> |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2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연수 비용 발생
-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(공무원)에 대하여 상패 및 부상품 구입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
 - 6호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
 - 7호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안 제7조 6호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 :
근속 20년 도래자 및 해당연도 연수 미실시 장기근속 공무원 매년 276명 연수 실시 추정(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)
- 안 제7조 7호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
격려금품 지급 : 20년 장기재직자 퇴직건수 60건 추정

나. 추계 결과 : '1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,605백만원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 원)

| 구분 | 계 | 1차년도 (2015년) | 2차년도 (2016년) | 3차년도 (2017년) | 4차년도 (2018년) | 5차년도 (2019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세 출 | 1,605,000 | 321,000 | 321,000 | 321,000 | 321,000 | 321,000 |
| 장기근속 선진지 연수 | 1,380,000 | 276,000 | 276,000 | 276,000 | 276,000 | 276,000 |
|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(상패, 부상품) | 225,000 | 45,000 | 45,000 | 45,000 | 45,000 | 45,000 |

- ※ 총무과, 활력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, 민선6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, 직원사기진작사업, 포상금
- ※ 총무과, 활력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,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, 퇴직자 관련 지원, 포상금

6. 작성자 :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정연철